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 28.(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8. 오중균 의원 외 17인 발의 (의안번호 462호)

나. 회부일자 : 2025. 4. 8.

다. 상정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4.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중균 의원)

가. 제안이유

-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의회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제1항)

다.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의회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2조(재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및 주요 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증감된 경우에는 연구용역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용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며,
- 안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례의 위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성과 같이 본 개정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용역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 28.(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8. 정해숙 의원 외 17인 발의 (의안번호 463호)

나. 회부일자 : 2025. 4. 8.

다. 상정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4.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및 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1)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 배

1)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부터 제3조(적용범위)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가 미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 설치 권장과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규정함.
- 안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는 감량률이 높고 내구성과 실용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한 품질인증제품 설치 등의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조건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는 감량기기 설치 후 배출방법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세대별, 비율별, 지원대상을 구체화함.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9조(보조금 신청)와 제10조(보조금 지급)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하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세대의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2년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정 수급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가 가정용 소형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감량기 설치와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문화 조성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 28.(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8. 김경이 의원 외 18인 발의 (의안번호 464호)

나. 회부일자 : 2025. 4. 8.

다. 상정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4. 18.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이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2, 2023. 9. 14. 시행)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제33조의3, 2024. 3. 26.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교실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성북구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우수선수 육성지원 구립체육단 운영 및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1조)
- 사.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 아.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 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전부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행사의 안전조치 의무화 규정과 성북구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수익계약 위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생활체육, 체육동호인조직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정의하였고,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

하는 프로그램을 “생활체육교실”로 명확하게 정의함.

- 안 제13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는 같은 법 제13조의2³⁾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 되며,
- 안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부터 제17조(대부·사용허가)까지는 같은 법 제33조의3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 그 밖에 근거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의 신설에 따른 조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 됨.

3)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9. 14.]

4)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의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법률 제19701호, 공포 2023.9.14., 2024.3.15. 시행)개정으로 1천명 이상⁵⁾ 밀집하는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개정⁶⁾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위탁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됨이 없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공유재산 대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지 않기로 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안 제14조로 한다.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 28.(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8. 소형준 의원 외 13인 발의 (의안번호 465호)

나. 회부일자 : 2025. 4. 8.

다. 상정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4. 1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기준을 비율별로 체계화하여 해당 조항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 마련과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규정 정비로 구민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이용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안 제5조)

나.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이용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기준 비율별 체계화와 관련 용어 정비(안 제10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10조 제4항 및 제11조제3호)
- 마.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3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5조(시설의개방) 및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제2항, 제13조(사용자의 책임)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 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음주·흡연·취사 행위

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와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설치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함.

-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는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체육관 등 공공체육 시설을 대관할 경우, 사용료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유소년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한 세입 감소는 2024년 대비 약 611만원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존 복잡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비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개선함.

〈성북구체육회 등록된 유소년스포츠클럽 현황〉

구분	성북유소년FC	성북유소년야구단	성북구리틀야구단
소속	성북구축구협회	대한유소년야구연맹	한국리틀야구연맹
운영종목	축구	야구	야구
회원수	관내초등학생 약 170명	- 선수반 : 8명 - 취미반 : 45명	- 선수반 : 25명 - 취미반 : 40명

- 그 밖에 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호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 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체육관 등을 대관할 경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⁶⁾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 확대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 28.(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8. 고영옥 의원 외 7인 발의 (의안번호 466호)
나. 회부일자 : 2025. 4. 8.
다. 상정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4. 18.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고영옥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2, 2023. 9. 14. 시행)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제33조의3, 2024. 3. 26.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명 재정비(안 제1조)
나.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 라.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의2)
- 마.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체육행사의 안전조치 의무화,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수의계약 위탁 관리 근거 등을 마련하여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6조의2(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도

록 의무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임.

- 안 제9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안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부터 제13조(대부·사용허가)까지는 같은 법 제33조의3⁷⁾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북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명 재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7)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정하도록 위임된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2 개정으로 1천명 이상이 밀집하는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를 반영하였음.

또한 같은 법 제33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위탁 관리가 가능토록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고 입법 타당성도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공유재산 대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지 않기로 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 28.(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8. 양순임 의원 외 11인 발의 (의안번호 467호)
나. 회부일자 : 2025. 4. 8.
다. 상정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4. 18.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정의 규정에 “학교체육시설”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 조문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성북구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클럽 지원과 보조금 환수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안 제9조에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스포츠클럽법」 제5조항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동지원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지도·감독)제1항 및 제2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요구서류 제출 기한을 명시함.
- 안 제8조(환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는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그 밖에 개정사항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동지원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보조금에 대한 환수 절차 및 지도 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 28.(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28. 소형준 의원 외 12인 발의 (의안번호 468호)
나. 회부일자 : 2025. 4. 8.
다. 상정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4. 18.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안 제6조까지)
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및 처우개선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성북구체육회 및 성북구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인력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3명⁸⁾이 근무하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는 2021년 1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⁹⁾되어 인건비의 기본급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와 수당은 시비

8) 성북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8명, 성북구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명,

9) 문화관광부의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지급, 복리후생 증진 및 유사 직군과 동일한 처우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에 의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

및 구비로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근무 연차나 경력에 따른 차등 적용이 아닌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인해 장기간 근무에도 기본급에 차이가 없어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부터 제3조(구청장의 책무)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와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지원사업과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 안 제9조(지원)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복지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으로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관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 28.(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51호)
나. 회부일자 : 2025. 4. 8.
다. 상정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4. 1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인력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별정직6급 → 일반임기제6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계 : 1,582명 → 1,583명 (+1명)
- 6급 이하 : 1,502명 → 1,503명 (+1명)
 - 별정직 계 : 9명(본청5명, 구의회사무국4명) → 8명(본청5명, 구의회사무국3명)
(△1명)

- 6급상당이하: 8명(본청4명, 구의회사무국4명)→7명(본청4명, 구의회사무국3명)
(△1명)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3. 20. ~ 2025. 03. 2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인력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5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으로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수를 정하고 있음.
- 우리 구의회는 의원정수 25명 이하로 전문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5급 2명, 6급이하 3명 이내로 둘 수 있음.

【별표 5. 시·군·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지방의원의 정수	전 문 위 원
----------	---------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5명 이하	7명 이내	4명	3명
40명 이하	8명 이내	4명	4명
45명 이하	9명 이내	5명	4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5명	5명
51명 이상	11명 이내	6명	5명

□ 주요 내용

- 본 개정안은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직급 중 6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을 일반임기제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총 정원수는 1,592명(정무직1, 일반직1,583, 별정직8)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줄고, 일반직은 6급 이하 1명이 증가하여 1,502명에서 1,50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그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하는 것임.

<개정 전>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92	1,592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 계	1,582	1,582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9	33	2	14	20
6급 이하	1,502	1,502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9	5	4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8	4	4		

<개정 후>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92	1,592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 계	1,583	1,583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9	33	2	14	20
6급 이하	1,503	1,503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8	5	3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7	4	3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의회 인력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의회사무국 정원 운영방안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직급 중 별정직 6급 상당 2명 중 1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10)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

1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원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사전 논의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서울시 자치구의회 전문위원 직급별 현황	
행정·별정직만 있는 자치구의회 (13개 의회)	임기제 포함 자치구의회 (12개 의회)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영등포, 관악, 송파, 강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서초, 강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24. 1. 1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